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1999. 3. 10.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2월 26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9년 2월 2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1999년 3월 9일 제62회(임시회)제6차 행정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정인화)

가. 제안이유

- 국민경제의 조속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대부료 및 매각대금을 일부 또는 전액 감면토록 규정하여 국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 현행 규정중 사회여건 변동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완화, 보완하여 구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외국인의 투자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를 정함. (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벤처기업 집적시설 설치자 등이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함. (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 외국인의 투자 유치, 국내시장 보호, 고용창출 등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 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투자지역, 투자액, 고용창출 효과, 국내부품 사용, 수출량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에 따라 대부료(사용료) 및 매각대금을 다음과 같이 차등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2조의3, 제38조의2제1항 내지 제5항)
 - 대부료등 : 당해 공유재산 대부료(사용료)의 50%, 75%, 전액 감면
 - 매각대금 : 당해 공유재산의 조성원가·매각가격 전액 감면·매각가격의 50% 감면, 매각가격의 25% 감면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시설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함. (안 제22조제10항)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 매각시 다음의 각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1조제4항)
 -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 림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전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때
-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로 하도록 완화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신발생무허가건물단속규정(예규594호)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토록 하여 일반 대부요율을 적용토록 함.
(안 제22조제6항)

-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산정에 있어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재산의 평가액을 산정후 전용 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산출하여 결정하도록 함. (안 제24조제5항)

-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납부기간을 국유재산법과 형평에 맞도록 다음과 같이 규정함.
(안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
 -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 경작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부기간을 일정 기간 유예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유재한)

동 계획(안)은 '98년도부터 추락한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정부에서 경제회복의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그 활성화 방안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인에 대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할 때 대부료와 매각기금을 일부 또는 전액 감면토록 하는 규정을 정하여 국가 경제회복과 활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국유재산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지법 등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사업인 또는 사업체에 활성을 촉구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되며, 다만 국제적인 시견이 없으므로 각국에서도 외국인 투자사업에 우리나라와 같이 특혜를 주는 법령이나 조례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본 조 22조의3을 보면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에 있어서 1호에 전액 감면, 2호 75% 감면, 3호 50% 감면 내용은 비율이 너무 크지 않은가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의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2
------------------	----

제출년월일 : 1999. 2. 26.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